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2019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0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 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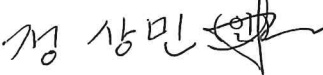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2020년 0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0년 4월 3 일


학교법인 창성학원

감사 : 

감사 : 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: 창성학원 관리과장

성명 : 

직명 : 대덕대학교 행정처장

성명 : 

감사보고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 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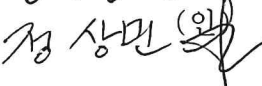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액		
1.법인 일반업무 관련			1건	별지 붙임
2.법인 수익사업 관련			3건	별지 붙임
계				

2020년 4월 3일


학교법인 창성학원

감사 : 

감사 : 

피감사 기관장

학교법인 창성학원

이사장 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법인 창성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19회계연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<p>1. 수익회계</p> <p>가. (현황) 2020년 2월 29일 현재 법인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총 11,187백만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치 금융기관(예치금액) : 국민은행(예치액: 8,436백만원), 수협은행(예치액: 2,752백만원) -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예치 운용기준 : 감사일 현재 없음 <p>(제도개선 사항) 법인의 기본재산 및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기관 예치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나. 법인 임대료·관리비 미수금 과다 사항</p> <p>다. 임대료 인상 자제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인상은 자칫 언론에 법인의 이미지 실추 가능성이 있고, 정부정책(반값임대료)에 반함 <p>2. 일반회계</p> <p>가. (현황) 2019년 4월 17일 업무추진비 40만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 : 대학 5급,6급 직원들과의 업무 간담회, 2019년 7월 18일 업무추진비 25만원(사무국장, 대덕대학 총장 및 대학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) 등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으로 카드전표이외의 간담회 참석자, 간담회 내역 등이 없음 <p>(주의)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 시 카드전표 이외의 간담회 참석자, 간담회 내용 등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업무추진비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</p>	<p>1. 수익회계</p> <p>가. 법인의 기본재산 및 임대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 시 현재 우리 법인의 주거래은행에서 산하학교인 대덕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과 은행의 안정성 있는 금리 제안 등을 고려하여 제1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운용·추진하겠습니다</p> <p>나.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과다한 미수금은 소수의 장기 미수 임차인으로 치우쳐 있어 관련 임차인에게 지속적인 미수금 독려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임대물의 반환 청구 등으로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</p> <p>다. 임대료 인상은 계약 20여년동안 임대료 동결로 수익사업이 악화되는 현재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음</p> <p>2. 일반회계</p> <p>가. 업무추진비 지출시 사용목적 및 참석자명단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안내하고, 매월 지출 서류 정리 시 미비 서류 보완하겠습니다</p>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직인(사인)